

회천중앙역 파라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청약본으로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 앱 또는 '회천중앙역 파라곤' 홈페이지(http://회천중앙역파라곤.com)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주요일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계약체결
일정	2025.10.10.(금)	2025.10.20.(월)	2025.10.21.(화)	2025.10.22.(수)	2025.10.28.(화)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공동주택과 - 10299호(2025. 10. 01)로 입주 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일자 :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29층 8개동 총 845세대

(특별공급 544세대(기관추천 84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193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 애최초 15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악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2025000449	01	072.8921	72	72.8921	25.5804	98.4725	56.6377	155.1102	50.7365	50	5	5	11	1	9
	02	084.6189A	84A	84.6189	29.9661	114.5850	65.7495	180.3345	58.9899	402	40	40	92	12	76
	03	084.4918B	84B	84.4918	29.8641	114.3559	65.6507	180.0066	58.8105	393	39	39	90	11	74
	합 계									845	84	84	193	24	159

공급금액표															
(단위 : 원)															
주택형 (악식표기)	공급 세대 수	총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5%)		2차 (5%)	1차 (10%)		2차 (10%)		3차 (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입주자정일	2026.03.10	2026.07.10	2026.11.10	2027.03.10	2027.07.10
72	50	1	2	111,502,586	305,497,414	417,000,000	5,000,000	15,850,000	20,85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2	2	111,502,586	307,497,414	419,000,000	5,000,000	15,950,000	20,95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3	2	111,502,586	312,497,414	424,000,000	5,000,000	16,200,000	21,2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4	2	111,502,586	317,497,414	429,000,000	5,000,000	16,450,000	21,45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5층이상	42	111,502,586	333,497,414	445,000,000	5,000,000	17,250,000	22,25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84A	402	1	13	129,440,998	357,559,002	487,000,000	5,000,000	19,350,000	2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	14	129,440,998	359,559,002	489,000,000	5,000,000	19,450,000	2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3	15	129,440,998	365,559,002	495,000,000	5,000,000	19,750,000	2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4	15	129,440,998	369,559,002	499,000,000	5,000,000	19,950,000	2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5층이상	345	129,440,998	388,559,002	518,000,000	5,000,000	20,900,000	2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84B	393	1	10	129,246,574	355,753,426	485,000,000	5,000,000	19,250,000	2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2	12	129,246,574	357,753,426	487,000,000	5,000,000	19,350,000	2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3	15	129,246,574	363,753,426	493,000,000	5,000,000	19,650,000	2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4	15	129,246,574	367,753,426	497,000,000	5,000,000	19,850,000	2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이상	341	129,246,574	387,753,426	517,000,000	5,000,000	20,850,000	2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 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건물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한]한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은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약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획	NH농협은행	301-0372-8695-1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획은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NH농협은행 301 -0372-8695-1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를 통해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 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 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3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악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잔금(90%)
	계약시		입주자정일
72	7,700,000		770,000
84A	9,400,000		940,000
84B	9,300,000		930,000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악식표기)	선택안	설치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72	1안	3개소	거실+주방+침실1	4,400,000
	2안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7,000,000
84A	1안	3개소	거실+주방+침실1	4,400,000
	2안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7,000,000
84B	1안	3개소	거실+주방+침실1	4,400,000
	2안	5개소	거실+주방+침실1,2,3	7,000,000

(3)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획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획	NH농협은행	301-0372-8700-7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악식표기)			72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1	8	8	17
		경기도	1	8	8	17
		인천광역시	-	8	8	16
	국가유공자		1	4	4	9
	장기복무 제대군인		1	4	4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4	8
	중소기업 근로자		1	4	3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양주시 1년 이상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50%)		3	20	20	43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20	19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92	90	19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2	11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9	76	74	159	
합 계		31	260	253	54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기준 및 자격요건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별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별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별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별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자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입주일자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입주일자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상생 세대로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범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기관인,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채용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잔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잔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정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구 분 특례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례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지역 : 해당주택건설지역(당주지 1년이상 계속 거주자 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 <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able>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취약신설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처속의 종류, 금액, 가입지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처적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표발표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